

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방식 개정 안내

□ 개정 취지

-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·추가납부를 최소화
- 또한,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

□ 개정안 주요 내용

-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 (80%, 120%)
 - *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% 기본 적용
 - (선택 방법)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
 - * 붙임 「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」 제출
 - (적용 방법)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
 - * 변경 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변경 불가
-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 조정
 - (개정 내용) 종전에는 특별소득공제를 1·2인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별도로 적용

□ 시행일 : 2015. 7. 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- *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e-book) 다운로드 및 조회
국세청홈택스 → 조회/발급 → 기타조회 → 근로소득간이세액표

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

관리번호			처리기간	즉시	
기본사항	성명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	
	①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 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%,100% 또는 80% 중에서 선택합니다.)	120%	100%	80%	
조정신청 내용	②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 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%,100% 또는 80% 중에서 선택합니다.)	120%	100%	80%	
	③조정하고자 하는 시기	년 월 원천징수분부터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			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4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천징수의무자 귀하

작성 방법

- “①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” 란에는 신청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방식에 “○” 표시를 합니다.
- “②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” 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에 “○” 표시를 합니다.
- “③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” 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